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7호서식] <개정 2025. 3. 11.>

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0일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
복구비 산정내용	면적	㎡
	복구비용	

신청사항	연차별 산지전용등 사업계획	총면적	1차년도 면적	2차년도 면적	3차년도 면적	4차년도 면적
		㎡	㎡	㎡	㎡	㎡
	분할예치사유					
	허가기간					

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분할예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
국립수목원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
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 음

처리절차

신청서	접 수	검토·확인	복구비분할 예치 결정	복구비예치 통지	복구비 예치
신청인			담당부서		신청인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